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

노동안전 종합대책

2025. 9. 15.

관 계 부 처 합 동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원인 진단 ····· 2

Ⅲ. 추진 방향 ····· 5

Ⅳ. 추진 과제 ····· 6

1.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····· 6

2.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 · 책무 확립 ····· 15

3.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····· 20

4.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····· 23

Ⅴ. 향후 계획 ····· 27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Ⅰ. 추진 배경

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

○ 누구나 **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**가 있으며, 국가는 **산업재해를 예방**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

> ▲ 국가의 **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**, OECD 국가 중에서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 <7.17, 대통령>

□ 산업재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

○ 중대재해는 **노동자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** 산업 전반의 **생산성 저하**와 **기업 신뢰도 하락** 초래 등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

* '24년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38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5.8%,
재해율 1%p 증가는 연간 1인당 노동생산성 383만 원 감소(산업안전보건연구원)

□ 중대재해 감축 정책 노력에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

○ **사고사망만인율**은 주요 선진국 대비 **매우 높은 수준**

* (사고사망만인율) '21년 0.43‰ → '22년 0.43‰ → '23년 0.39‰ → '24년 0.39‰

** 주요 국가 사고사망만인율('23년): 일본 0.12, 독일 0.11, 미국 0.35, 영국 0.03

○ 예방 가능한 **재래형 사고**(추락, 끼임 등)가 **반복적**으로 **발생**하고, **대형 사고도 지속** → **'산재공화국' 오명 여전**

□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·근본적 원인 해결 필요

○ 그간의 대책은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, **원인과 결과**를 **뒤바꿔 진단**함으로써 제대로 된 **처방을 내리는 데 한계**

○ 중대재해의 **근본적 해결**을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**구조적 원인**에 대한 **정확한 진단**과 **처방 필요**

❖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모든 자원 집중
❖ 근본적 해결을 위해 **노동자**는 보호의 객체에서 "예방의 주체"로 **전환**
❖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**기업**에는 "확실한 책임"을 부과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Ⅱ. 현황 및 원인 진단

1. 중대재해 현황

□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, 크게 줄지 않는 상황

* (사고사망자) '22년 644명 → '23년 598명(△46명) → '24년 589명(△9명)

○ 50인 미만 **소규모 사업장**(339명), 기본 안전 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**추락·끼임·부딪힘** 같은 **재래형 사고**가 **전체 사망사고의 약 60%** 차지

○ 유해·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**대기업·공공기관** 등에서 **사망사고 반복, 대형 사고**(동시 2명 이상 사망)도 **다수 발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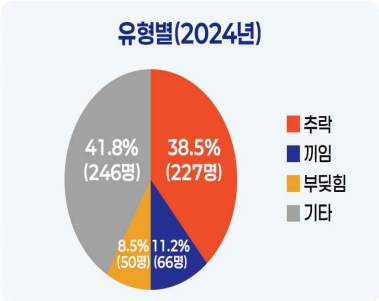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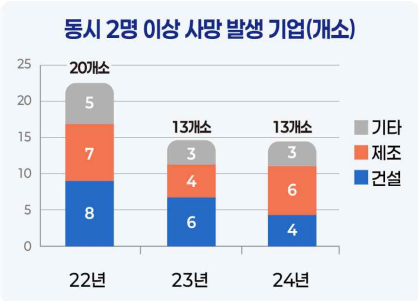

□ 하청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, 고령자 사고 다발('24년)

○ 하청노동자 **사고사망자**(281명)는 **전체 사고사망자**(589명)의 **48%**, 50인(억) 이상 사업장은 **하청노동자**가 **72%**(250명 중 179명)

○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** 중 화물차주·퀵서비스 기사 등의 **교통사고, 건설·제조업**을 중심으로 **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지속 증가**<유족급여 승인 기준>

* ▲특고(명): ('22) 63 → ('23) 83 → ('24) 101 ▲외국인(명): ('22) 85 → ('23) 85 → ('24) 102

○ 60세 이상 고령 사고사망자는 250명으로 **전체의 42.4%**, **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** 발생 비중은 **약 70% 수준**(67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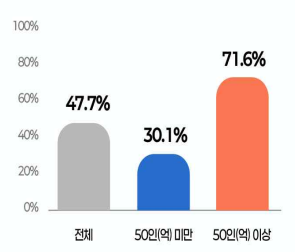

〈하청노동자〉

〈특수형태근로종사자〉

〈외국인 노동자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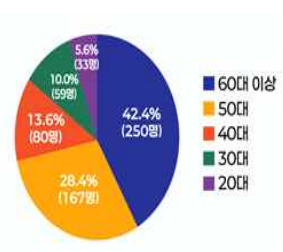

〈연령별 현황〉

2. 원인 진단

□ 소규모 사업장 부족한 여력 · 한정된 행정력으로 정책 효과성 저하

○ **소규모 사업장**은 **인력·재정** 등이 **부족해 노후 설비·불안전한 작업 방식** 등 다양한 위험 상존

- **공급자 중심**의 **재정지원***으로 현장의 **안전 관리 수준 제고**에 **한계**

* 사전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지원 필요성 직접 입증, 과다한 신청 서류로 상당 시간 소요

○ **중앙 정부 중심**의 **점검·감독**으로 **소규모 영세사업장**(50인 미만)까지 **행정력**이 **도달**하기 어려운 **구조**

* 산업안전감독관 1,000여명,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0만 개소(전체 사업장의 98%)

- **지방자치단체**는 **감독 권한·인력·예산 미비** 등으로 사업장 점검·감독 등 **예방 활동**에 **제약**

○ **형식적 안전 교육** 등으로 **안전 의식**과 **경각심 저하**

현장의 목소리

"재정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, 컨설팅 내용도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"
"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, 이수했다는 서명만 받는 경우 많아요."

□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

○ 고질적인 **다단계 하도급 구조**로 **원·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, 불법하도급** 등으로 인해 **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**

* (○○공사 사례) 당초 해체공사비는 3.3㎡당 28만 원, 불법재하도급 과정에서 당초의 16%인 4만 원에 시공

- 재하도급 과정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·보건조치** 및 **정보 제공** 등 **안전 의무 공백 초래**

○ **이익 주체**와 **책임 주체 간 괴리**로 **실질적인 안전 투자**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**서류 구비, 법률 컨설팅** 등에 **집중**

현장 사례

· **(○○ 맨홀사고)** 가스농도 미측정 및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등 재하도급 과정에서 안전 의무 공백 → 오수관로 측량 작업 중 3차 수급인 노동자 2명 질식 사망

□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에 한계

○ **원청 사업장 노사** 중심의 **안전·보건 의사결정 구조**로 인해 함께 일하는 **당사자인 하청노동자**의 **참여 제약** → **위험**의 **전가**

○ 급박한 위험 시 **작업중지 및 대피**할 수 있는 **소극적 권리**만 **보장**,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실제 **작업중지 사용 제한**

○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을 찾는 **위험성평가 과정**에도 **노동자 참여**를 **보장**하고 있으나, **강제력이 없어 이행 담보**에 **한계**

현장 사례

· **(○○ 현장)**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하였으나, 작업중지 요건(급박한 위험)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8년 소요

□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

○ 안전·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**처벌**이 주로 **소액의 벌금**, **집행유예** 등에 그치고 있어, **경제적 불이익**은 **미미**

* ▲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중심 판결(51건, 86.4%),
▲산업재해 발생 없이 점검·감독 중 적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99.6%가 벌금형(평균 130만원)

■ **중대재해처벌법**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**양형기준 부재**

○ 안전보다는 **비용 절감**을 목적으로 **공기 단축**을 **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, 노후 설비·시설** 등의 **개선**도 **비용 부담**으로 **소극적**

○ 사업장 자율 개선과 **시정조치**를 **우선**하는 **점검 확대** 등으로 **법 준수**에 대한 **인식 약화**

현장의 목소리

"일부 현장에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기만 하면,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으로 사전적인 안전조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."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Ⅲ. 추진 방향

기본 방향

- 영세사업장,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
- 정부-지방자치단체-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
-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

사고 없는 일터, 안전 대한민국

'30년까지 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(0.29‰) 달성

예방 보상	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	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3 지방자치단체·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
	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·책무 확립	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3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
구조 개선	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	1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2 안전·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3 안전 의식·문화 확산
제재	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	1 신속·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2 여신심사,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3 사고 조사·수사 강화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Ⅳ. 추진 과제

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

1.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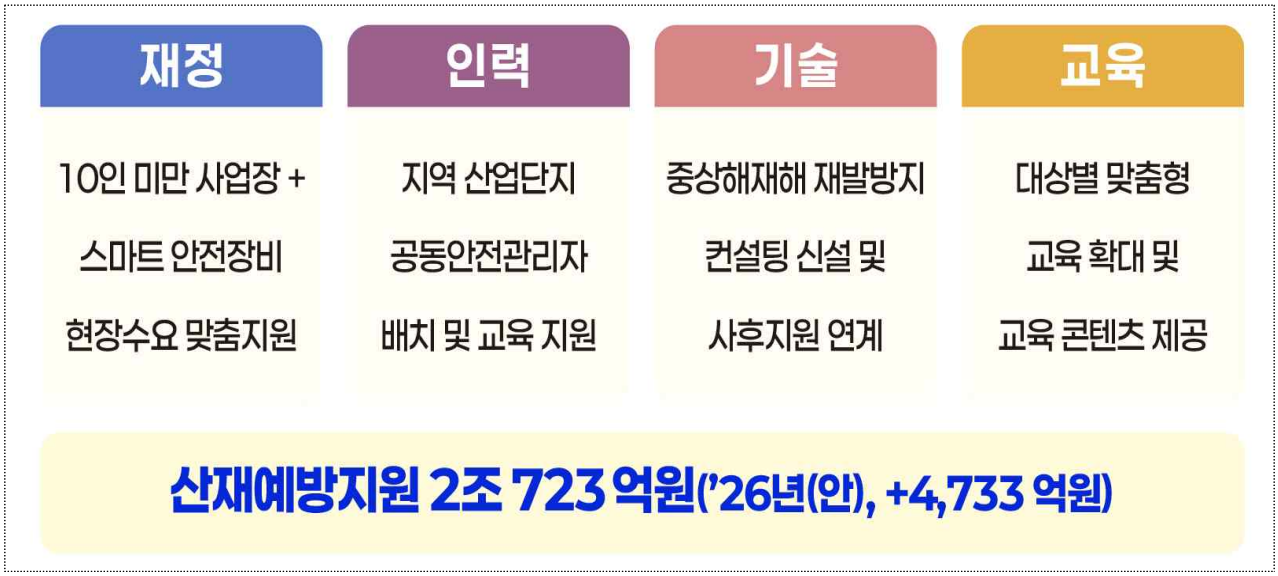

1 소규모 사업장, 현장 수요 중심으로 재정 지원 개편

□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

○ **10인 미만 사업장**(50억 미만 건설 현장)의 **추락·끼임·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**('26년(안) **433억 원 신설**)

▪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**핵심 품목 집중 지원, 지원 수준 향상**

지원 품목	**[추락]** 추락방호망, 안전난간 일체식 작업 발판, 지붕안전대 부착설비 **[끼임]** 노후 컨베이어, 롤러기, 방호장치 **[부딪힘]** 신체감지센서 등 지게차, 크레인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충돌예방장치
지원 수준	소요 비용의 **최대 90%**(기존 50~80%)

○ 안전관리 수준의 **실질적 개선**을 위해 **기술지원**과 **연계** → **서류·절차 최소화**하여 **지원**(Quick-pass) 확대('25년 8,000개소 → '26년 9,000개소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□ 스마트 안전장비, 스마트공장 확산

○ **스마트 안전장비**를 통한 **소규모 사업장**의 작업자 안전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**지원 규모 및 자율품목 확대**('26년(안) **370억 원**)

▪ 지게차·컨베이어 등 기계·설비에 **인체감지센서** 등 **방호장치** 단계적 **의무화** 검토(기술 안정성, 사업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연계)

〔 재정지원 품목 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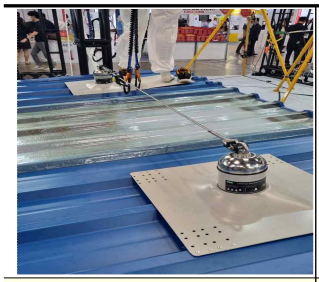			
〈추락: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〉	〈끼임: 방호덮개〉	〈부딪힘:인체감지센서 장착 지게차〉	〈스마트: 세이프티 볼〉

○ 자동화 설비·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통해 현장의 **안전성을 제고**할 수 있도록 **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**('26년(안) 300억 원)

[부처협업형 산업안전 스마트공장]

□ 사업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구조 개편

○ **현장 수요**를 **기반**으로 지정품목 중심의 공급자 편의적 지원에서,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**시설·장비**를 **지원**하는 **체계로 개편**

▪ **수요가 많거나 공공기관 인증**(S마크 등) 받은 **시설·장비**는 **지원 심사 절차**를 **간소화**하여 **신속**하게 **지원**

▪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한 **선지급 규모 확대**(지원 금액의 70→80%), 산재예방시설 **융자 규모·지원 확대**(현재 구매만 지원→ 대여까지 확대)

	현행	개선
지원 체계	**공급자 중심, 제한적 선택**	**수요자 중심, 자율적 선택**
지원 품목	사전 지정 품목 중심	**자율 품목 확대**
심사 절차	투자계획 확인 및 심사	(인증, 검증 장비) 심사 절차 간소화
선지급 규모	지원 금액의 70%	지원 금액의 80%
산재 예방 시설융자	구매하여 보유하는 경우만 지원	+ 건설기계 **대여(임차)** 확대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 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

□ R&D 사업 등을 통한 안전 기술 개발

○ 다부처 협업 R&D로 **안전분야 기술·제품** 개발 → **현장 활용 확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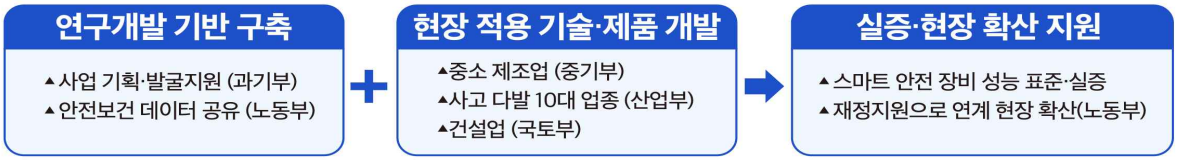

- **연구개발 확산**을 위해 **안전보건데이터**(총 2,493종, 1,465억 개) **공유 플랫폼 구축** 및 **스마트 안전장비 성능·표준 개발**(노동부, '26~'29)
- 업종별 **현장**에서 **활용**할 수 있는 **안전기술·제품 개발**

업종	주요 내용
중소제조업	· 제조중소기업 대상 **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장비·솔루션**(안전센서, 웨어러블 장비 등)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(R&D) 추진(중기부, '25~'28)
사고 다발	· **사고 다발 10대 업종별**(배터리, 조선, 뿌리 등) 제조 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**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·실증**(산업부, '25~'28)
건설업	· 디지털화·자동화를 위한 기술 혁신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, 건설 全 주기 **안전혁신 기술개발**(R&D) 추진(국토부, '26~'30)

○ **연구개발**(R&D)을 통한 **기술·제품**은 검증 과정(Test-bed)를 거쳐 **중소 영세 사업장**에서 **활용**할 수 있도록 **재정지원**(노동부)으로 **연계**

□ AI 기술 활용 확산

○ **중소사업장**의 **위험관리 역량 강화**를 위해 **위험요소 식별** 및 **개선 사항을 제시**하는 **AI 도구 개발**(노동부)

* 사업장 정보(텍스트, 사진 등) 입력 → 위험요소 식별 → 개선 사항 제시 → 자체 관리에 활용

- AI·빅데이터 기반 **고위험 사업장 선정 프로세스**를 **고도화**하여 **사업장 점검·감독** 및 **지원** 등에 활용

○ 끼임·추락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**사고 위험 분석** 및 **예방**을 위한 **AI·디지털 트윈*** **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** 지원(과기부)

* 현실 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, 실시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·예측 수행

○ 산단 내 IoT, 드론 등 **첨단기술**을 **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** 지원(산업부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3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· 기술 지원

□ 안전 · 보건관리자 확충 지원

○ **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** 대상 **사업장 확대**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)

* (現)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(300인 미만은 외부 위탁 가능)
→ (改)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확대

○ 소규모 사업장 **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부담**을 **경감**하기 위한 **지원 방안 신설 추진**(선임 대상 확대 시행 시기와 연계)

- 안전·보건관리자 **인건비** 또는 **민간 위탁 비용 지원 검토**
-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(5년 이상 경력)을 **자체 선임**할 수 있도록 **안전관리자 양성 교육*** 지속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)

*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더라도, 양성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('28년까지만 실시 예정)

□ 지역산업단지 등에 공동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
○ 업종별 협·단체, 노·사단체, 산업단지 내 관리주체와 협업, **자부담 비율 축소**를 통한 **공동안전관리자*** **채용 확대** 및 **현장 지원 강화**

* 업종별 협·단체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,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(50인 미만)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지원

○ **맞춤형 교육 프로그램**(업종·공정·단계별) **신규 운영**으로 **역량 강화 지원**

□ 선제적 기술지원 · 사후지원과 연계

○ 기존 사고사망 중점 관리에 더해 영구 후유장애, 사고사망 전이 위험이 큰 **중상해재해**(요양 기간 90일 초과) **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도입**

* 사고사망 발생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비율 37.6%('24년 사고사망 기준)

- 해당 사업장 **신속 현장 방문, 원인 분석** 및 **재발 방지 활동**을 **지원**하는 **선제적 컨설팅 신설**('26년 8천개소)

○ 취약사업장 **컨설팅**으로 파악된 **위험요인**이 **실제 개선**되도록 고위험 사업장 대상 **이행 점검 확대, 재정지원과 연계**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4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 · 지원

□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 · 지원

○ 생명안전 인지도·감수성 제고를 위한 **대상별 안전 교육 확대**

대상	주요 내용
공공	· **공무원**(중앙-지방) **교육과정**을 **개설·운영**하고, 관련 업무 **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**
외국인	· 모국어·쉬운 한국어 기반 **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운영**, **전용 앱**으로 **번역 자료 보급** +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연계 **산업안전 VR 체험시설 설치·운영**('25년 9개 센터 설치)
사업주	· **CEO·재직자 대상** 全 교육 과정(중소기업연수원 6개소)에 **산업안전**(유형별 위험요인, 핵심 안전수칙 등) 필수 주의사항 **사전교육 실시**(年 6만명) + **찾아가는 교육 확대**
학생	· 직업계고 대상 **찾아가는 안전교육 제공**, 학생 특화 **기초 안전 이러닝 교육과정** 개설, 일반고(또는 초중고)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공

□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공

○ 실제 체험이 어려운 **위험 상황**(추락, 끼임 등) 및 **작업공정**을 **재현**한 **VR 교육 자료, 특별교육 동영상** 제작·배포

▪ **사업장 및 교육기관**에서 **활용**할 수 있도록 숏폼, 위험요인별 교육 콘텐츠 등 **수용도 높은 콘텐츠 개발·보급**

○ **체험 교육 활성화**를 위한 **인센티브 확대***, **공공 안전체험 교육장**(現 4개소)·**국민안전체험관**(現 2개소) **추가 설립** 추진

* (예시) 교육시간 2배 인정, 체험 교육 콘텐츠 무상 제공, 우수 체험 교육장 포상 등

5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○ **안전시설**에 대한 **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***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

* (現) 건물·구축물, 비품, 운송구는 세액공제 미적용 원칙이나,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은 허용
→ (改)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

○ 노사단체·유관부처*·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**산재예방 우수 기업 발굴·선정 → 모범 사례 확산**

* (예시)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(행안부),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(경기도)

▪ 우수기업에는 **세무조사 유예, 근로감독 면제, 정부포상 시 가점, 정책금융 금리·한도 우대, 정책지원 시 가점** 등 **혜택 제공**

2.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

1 외국인 노동자: 고용 제한 강화 +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

□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

○ **외국인 사망사고** 발생 시에는 전부 **3년간 고용 제한***, **중대재해**에 해당하는 **질병, 부상** 등은 **1년간 고용 제한** 적용

* 1년 이후 사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토대로 제한 기간 단축

고용 제한 기준	현행	개선
1년	산재 사망사고 발생	사망 이외 외국인 중대재해 포함 *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발생 재해 등
3년	산재 사망사고+ 5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	외국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

○ **건설업 고용 제한** 단위를 '**현장 → 사업주 단위**'로 변경해 산업재해 발생,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의 **실효성 제고**

* 고용허가 단위도 사업주 단위로 일치시켜 외국인노동자 현장 간 이동 원활화(유예기간 부여)

□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

○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**유관기관 협업**을 통해 '**외국인 안전리더**' **확산**('26년 200명) → 외국어 **안전 교육 제공** 및 **작업 노하우** 등 **전수**

* 외국인 안전리더: 장기 근속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지정하여, 안전교육 강사·신규 외국인 노동자 멘토링 등 제공

○ **외국인 안전리더**를 **적극 활용**하는 **기업**에 **인센티브 부여**(신규 고용허가 선정 시 가점 등), 안전리더는 **활동 수당 지급** 및 **역량 강화 교육 제공**

□ 주거 환경 개선

○ **노동부-지자체 협업,** 농촌 중심 **주거환경 시설 정비** 및 **숙소지원** 확대

▪ **사업장 정보 제공**(노동부)**-숙소 점검**(지방자치단체)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등 취약 숙소에 **엄정 대응**, 건축물의 **위험성 인식 확산**

□ 현장 여건을 고려한 훈련 과정 운영

○ **외국인 노동자**의 **직무안전 역량**을 제고할 수 있도록 **주말에 참여**할 수 있는 **직업훈련** 운영 지원(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- 훈련기관 등 협업)

2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법의 보호 범위 확대 + 교통사고 예방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**직종**(現 14개 직종) 및 **적용**되는 **규정 확대** 등 **보호조치 강화**(산업안전보건법)

■ **공정한 계약 체결**을 위해 택배업 **위탁 계약** 시 **표준계약서**의 **주요 사항*** 반영 **의무화**(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)

* 계약기간, 위탁 지역, 위탁 업무, 수수료, 손해배상, 당사자 준수사항 등

○ 산안법 상 **안전조치*** **준수 점검 확대,** 노후 이륜차 **무상 정비,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** 등 **지원**

* 안전보건교육 실시, 안전모 착용,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, 비정상적인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

■ 이륜차 교통 위반 **집중 단속**(안전모 미착용, 과속, 신호위반, 불법유턴 등) + 후면 카메라·안내 표지판 등 **단속 시설 확충**

○ 야간·택배 작업 등 **고위험군**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**건강진단** 도입 추진(산업안전보건법)

○ **배달종사자**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, **안전교육 의무화**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(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)

❖ 7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 채널을 만들고 배달 노동 **실태조사 착수**('25.9월~)

3 고령노동자: 특화 작업환경 개선, 교육 - 건강관리 강화

○ 고령노동자 친화적 **작업환경 개선*** **비용 지원**('26년(안) 30억 원)

* 문턱 제거, 난간 설치, LED 조명 확보, 단순한 문구를 큰 글씨로 제작, 이중 위험 경보기 설치 등

■ 고령노동자 신체적·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**특화 컨설팅·기술지도**

○ 건설·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**고령노동자 다수 고용 업종·직종별** 작업 시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**작업관리 가이드라인** 개발·보급

*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▲작업지시할 때 사업주 고려 사항, ▲작업시간, ▲작업 속도, ▲신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, ▲조도 소음 등 작업환경, ▲건강관리 등

○ 고령노동자 다수 종사 **유관기관**(노인인력개발원 등)과 **협업**하여 특화 **콘텐츠 개발·보급** 및 **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**(年 5만 명)

○ **뇌심혈관질환** 등 고령자 **고위험군**을 대상으로 **심층건강진단** 및 **사후관리**(건강상담 등) **지원**

3. 지방자치단체 · 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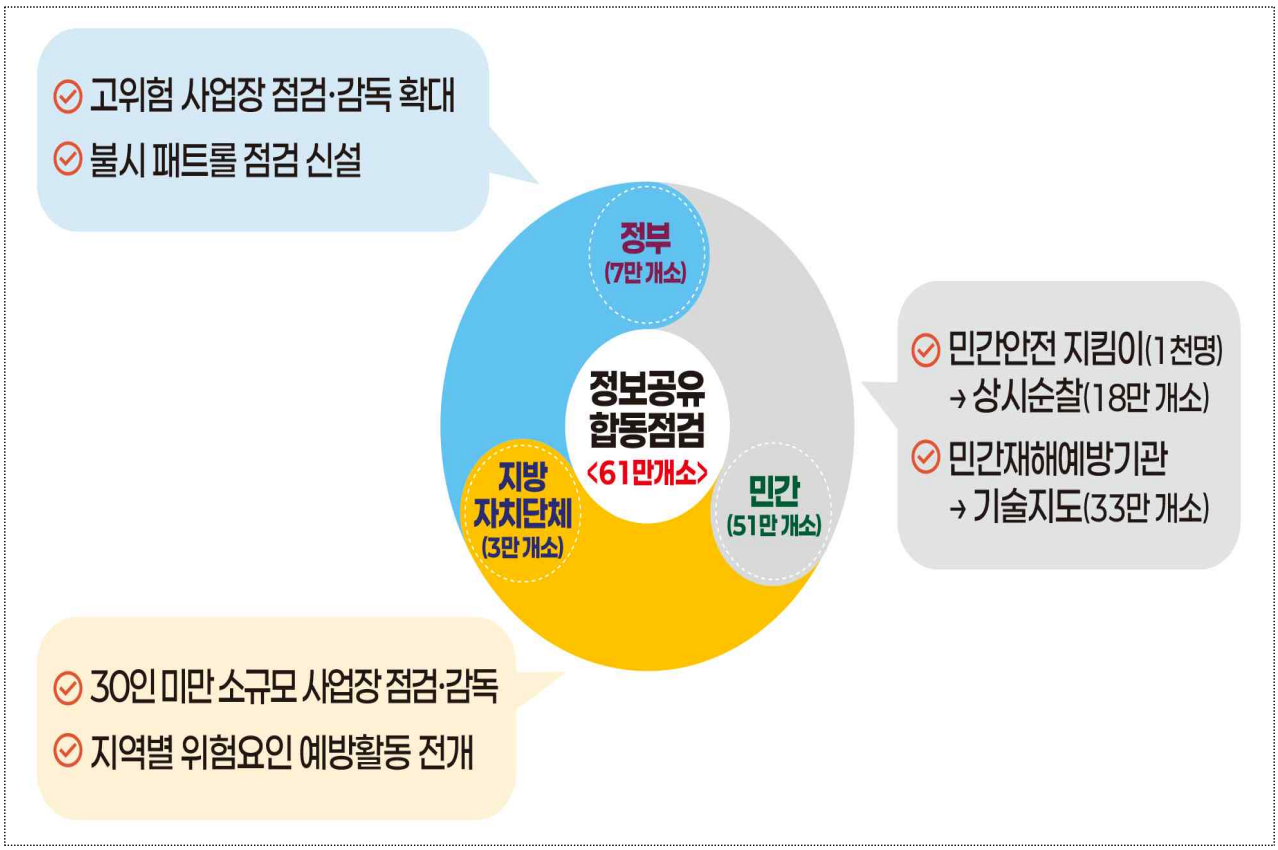

1 중앙정부 : 고위험 사업장 점검 · 감독 확대 (7만개소)

○ 감독관 **증원**과 **연계**하여 **감독 물량 대폭 확대**('25년 2.4만→'26년 5만→'28년 7만개소)하여 **사각지대 해소**

■ 단순 점검(시정조치 우선) 보다 **감독 비중 확대**, 위반 시 법에 따라 즉시 집행

○ 신속 대응을 위한 **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**, **「안전일터 신고센터」**와 **연계**해 **즉시 확인 및 개선지도 체계 구축**

■ **계절·주요 위험 요인**에 대해서는 **현장점검의 날**(매월 2·4주 수요일)을 통해 전국 지방노동관서-안전보건공단 **일제 점검 실시**

▲(계절) 폭염, 한파, 미세먼지, ▲(위험 요인) 추락, 끼임, 부딪힘 등

○ **복합 문제 사업장**(예: 불법파견+중대재해)은 **합동 감독**(산업안전+근로기준)으로 근로시간·형태·안전 조치 등 **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파악·개선**

2 지방자치단체 : 30인 미만 점검 · 감독 (3만개소) + 지역 특화 예방

○ **감독 권한 위임** 및 **산업안전감독관 증원**과 연계하여, **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·감독** 추진('28년까지 3만개소 목표)

○ **지역 특성**에 맞는 **예방 사업 기획·운영**토록 사업 **신설**('26년(안) **143억 원**)

- **지붕공사, 벌목작업** 등 **지역별 산재 다발 위험요인**에 **집중 대응**
- **대상별**(고령자, 외국인 등) 다양한 **특화 예방사업**을 통해 지역 내 산재발생 감소 → 경기도 등 **우수 자치단체 모델 전국 확산 유도**

* (예시) ▲지역 특화 산재예방 사업(축사, 상·하수도 맨홀 작업, 농·임·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·점검 등)

○ **중앙-지방 안전 네트워크 구축**으로 **발주 공사** 및 **취약 사업장** 등에 대한 위험 작업 **정보 공유,** 유관기관 **합동 점검** 등 **개별 관리 강화**

- **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**(예시: 맨홀 작업 등) **작업계획** 등 **정보 공유**를 통해 **안전성 확보** 후 작업 실시

3 민간 :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상시 순찰 (51만개소)

○ **역량·경험**이 있는 민간·공공분야 **퇴직자, 노사단체 소속 인원** 등을 **안전지킴이**로 **채용·위촉**(1천명, '26년) → **영세사업장**(18만개소) **집중 투입**

* (예시) 소장,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**1억 원 미만 초소형 건설 현장 등 집중 점검**

○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재해 유형*에 대해서는 **민간재해예방기관**(現 2,124개소)을 통해 **집중 지도·관리 강화**(33만개소)

* 영세 축사,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 다발 공사 등

○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방노동관서 - 대한산업안전협회 - 대한산업보건협회 **협조 체계**(핫라인) **구축**하여 **영세사업장 관리 강화**

- 중대한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**즉시 통보**하여 **감독 실시**, 개선 필요 시 **재정지원·종합 기술지원**(안전+보건)으로 **연계**

❖ **지방노동관서-지방자치단체-민간 협업체계 구축**(협의 정례화) → 정보공유, 합동점검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 · 책무 확립

1.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

1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

○ 건설 현장 품질·안전성 확보를 위해 **발주자**(공공·민간)에게 공사 규모·특성 등을 고려한 **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**(건설기술진흥법, 건설안전특별법)

▪ 중소건설사의 **적정공사비 확보**와 **현장 안전관리** 등을 위하여 **적격심사**(국가 공사 100억 원 미만) **낙찰하한율 상향**(+2%p)

○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**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**를 발주자에서 **원청**까지 **확대**(산업안전보건법)

* 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
▪ 부정사용 등에 대한 **점검·감독**을 **강화**하고, 효과 분석·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계적 인상**(계상 요율) **검토**

▪ **조선업** 등 **타업종**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**계상**토록 **확대**

○ **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집중 점검**(노동부, 공정위 등), 부당특약에 대한 **과징금 부과수준 상향***(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)

* 과징금 산정요소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표 상향 中(2점) → 上(3점)

2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

○ **민간 공사 설계서**에 **공사 기간 산정 기준**을 **포함**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**적정 공기 확보 유도**(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)

* 現 공공·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있으나, 민간공사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부재

▪ **발주자**가 **적정 공기**를 **산정**하고, 전문기관, **인·허가기관의 장이 심의·검토**하는 방안 도입(건설안전특별법 제정)

○ 폭염 시 **노동자 보호**를 **위해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**로 **폭염** 등 **기상재해 추가 추진**(산업안전보건법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.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

1 인력 · 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

○ **안전경영 원칙** 위반하여 **중대재해 발생**에 **책임** 있는 **기관장**을 **해임**할 수 있도록 **법적 근거 마련**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)

○ **기관별 2인 1조**가 필요한 **위험작업**, 6개월 미만 신규자 **단독 금지작업** 운영 실태조사 → 부실 기관 **개선 조치** 및 **안전 관리 등급 심사**에 반영

▪ **재난·안전 관리**, 고위험 현장 인력(2인 1조 등) 우선 **재배치·증원 추진**

○ 노후 시설·장비 교체,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에 대한 **투자 계획 작성**, 기관별 **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·관리**(주요 기관, 분기별)

○ 기관장·경영진, 수급업체 사업주·현장관리자, 현장 근로자 **안전교육 강화**

2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 포함 안전 관리 평가

○ 공공기관 경영평가(기재부)에 **기관장 안전 경영 책임**을 **주요 사항**으로 반영, **산재예방 분야의 배점**(현재 0.5점) **대폭 상향**

▪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**건설현장**에 대한 **심사 확대** (안전관리등급제 건설현장 現 28개 → 40개 이상 확대)

○ 공공 부문에서부터 **원청**으로서 **안전 관리 책임**을 다할 수 있도록 **경영평가**에 **안전 가점 신설**하여 **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** 등 반영

▪ **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**에 **도급사업** 관련 **안전 관리 항목*** **신설**, **'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'**(잠정)에 **'협력사 안전관리'** 포함

* 원·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·운영, 합동 안전보건 점검,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

○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(노동부)는 **중대재해 반복** 시 **평가점수 대폭 감점**(50%), **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**

▪ **全 기관 평가 등급**(S~E) **공표** → 기관 차원의 주의·경각심 제고

* '23년까지 미공표, '24년부터 우수 등급(S, A등급) 기관만 공표

○ **지방공기업**에 대한 **안전관리 수준 평가 도입·확대**(現 17개소 시범 운영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3. 안전 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

1 불법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구조 개선

○ 건설 현장 **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**(국토부, 노동부 등)
→ 적발 시 **벌점, 형사처벌** 등 **엄정 조치**

○ **불법하도급**에 따른 **제재 수준** 및 **사유** 등 **확대**(건설산업기본법)

* 불법하도급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 기준 강화(現 5년 내 3회 이상)
주체별(원수급인·하수급인) 책무 확대, 위반 시 행정처분·벌칙 수준 강화 검토 등

○ 6개 분야 **공공기관**(발전, 에너지, 공항 등) **하도급 실태조사**를 통해 공공기관의 **하도급 개선 방안** 마련(관계부처 합동)

○ 공공부문에서 **질식 위험업무**의 **하도급 제한**(산재예방 조치가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)을 위해 **관련 규정 정비**

* 공공부문 계약 시 입찰공고문·과업지시서 등에 질식 위험 업무 수급인(하도급 포함)의 필수요건(장비·인력) 우선 반영(행안부·기재부 협조), 관련 규정 정비 추진

2 적격수급인 선정 등 주체별 안전 관리 강화

○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**수급인을 선정·계약**토록 **의무 내용·절차 명확화*** → 위반 시 **실질적 제재 병행**(산업안전보건법)

* (예시) 수급업체의 직전 3년 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,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확인

▪ **'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'** 개정·보완도 병행

○ **건설공사 全 과정 주체별** 안전보건 **책임·역량 강화**(노동부, 국토부)

▪ 사업주(시공자) 외에 **발주자, 설계자·감리자** 등의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**책임 신설·강화** 등 **법 제·개정 및 제도 개선**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4.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

1 알 권리: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

□ 사고 정보 공개 확대

○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,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**재해조사보고서 공개**(산업안전보건법)

▪ 旣 조사된 재해 중 **판결**이 **확정된 경우**에는 법 시행 이전에 보고서 **공개**

○ **중대재해 발생 기업명** 등을 **정기적**으로 **공개**하는 방안 마련(예시: 반기)

□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신설

○ 재해 현황·재발방지대책, 안전보건관리체제, 안전투자 등을 **공시**토록 **'안전보건공시제'**를 **도입**하여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(산업안전보건법)

*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,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

○ **공공기관**의 **산재 사망자 수 공시 주기 확대**(年 1회 승인 기준 → 분기별 발생 기준), **'중대재해**에 **해당**하는 **부상자 수'** 공시 항목 **신설**

*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시 공시

□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강화

○ **중대재해 다발 업종**의 **위험성평가 표준모델, 고위험요인 자료** 등 보급, **지역 산업단지 영세업체** 대상 **합동 교육·컨설팅 지원**

○ 위험성평가 **미실시** 및 **필수 절차 누락 시 벌칙 적용**, 해당 작업·공정 **노동자 참여, 결과 공유 의무화** 및 **노동자대표 참여 보장**(산업안전보건법)

〔 위험성평가 필수 절차 〕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 참여 권리 :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

○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하였던 **산업안전보건위원회**를 **원·하청 노사**도 **함께 참여**토록 **확대**(산업안전보건법)

*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기구

- 공공기관,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·철강·자동차 등에 **원·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**
- **원·하청 노사**가 **자체 안전규범 수립**, 노사 모두 **성실 이행 책임·의무** 부담

○ 건설업 원하청 **'안전·보건협의체'** 구성·운영 **의무 범위 확대** (120억 이상 → 50억 이상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)

○ 노동자대표 추천 시 소속 사업장의 **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** 및 **교육 훈련** 지원(산업안전보건법)

* 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, 근로자단체,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

- 소속 사업장 특별 감독 시 **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의무화, 작업중지** 및 **시정조치 요구권** 부여
- **사업장 감독·점검** 시 안전보건 전문성(실무경력, 자격 등)을 갖춘 **노동조합, 사업주단체 등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** 추진

3 피할 권리 :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

○ **노동자**가 **직접 사업주**에게 적극적으로 **작업중지** 또는 **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**, 노동자 **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***(산업안전보건법)

* (現)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→ (改)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(유해·위험 발생 농후 시)가 있는 경우

○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**불리한 처우**(부당해고, 징계 등)를 받은 경우 **형사처벌 신설** 및 **법적 구제 절차 명확화**(산업안전보건법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

1.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

1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및 인력 확충

○ 지방자치단체에 **근로감독권한**을 **부여***하고, **감독관 인력 확충** 및 사업장 점검·감독 시 **협업 강화**

* **(범위)**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예방적 감독 수행, **(권한)** ①사업장 감독, ②사후조치 권한(사법경찰권)

■ 「가칭**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**」 제정, 매뉴얼 마련 등 **전국적·통일적 집행 기준 마련**

○ 감독·수사 강화를 위해 **산업안전감독관 대폭 충원**
('28년까지 중앙 + 지방자치단체 약 3,200명 증원 목표)

■ 중앙·지방 감독관 인력보강과 연계하여 **점검·감독 물량 지속 확대**

2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 및 보직 관리

○ **전문성 확보**를 위한 **기술직군 채용 확대**(現 43% → 70%)

■ 직무능력이 탁월한 인력에 대한 **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 전문인증제** 도입(승진 시 가산점 부여), 순환보직 제한

○ 임용 직후부터 **촘촘한 멘토링**과 체계적 **도제식 훈련** 실시, 경력 단계에 맞춰 **현장 중심의 체험·실습형 교육 강화**

〔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교육 과정 〕

① 신규 감독관	② 경력 3년 미만	③ 경력 3년 이상
■ 효과적 업무 적응을 위해 체험·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(8주) ■ 산안법령·제도, 세트장을 활용한 사업장 감독 및 재해조사 실습	■ 업종별 위험기계·기구·설비 중심 체험·실습교육 ■ 산업안전·보건 기사 수준 이론교육 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본 역량	■ 반도체공정, 전기공사, 기업 안전업무 등 작업 중심 심화 체험·실습 ■ (전문인증감독관) 산업안전·보건 기술사 수준 고급이론교육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. 안전 · 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

1 안전 · 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

○ **현장 경력 정보**를 **체계적**으로 관리하여 경력별(초급, 중급, 상급) **직무교육 실시, 이수증 발급** → **안전·보건관리자**의 **경력관리** 유도

〔 안전·보건관리자 경력 관리 〕

초급 과정(3년 미만)	⇨	중급 과정(3년 ~ 5년 미만)	⇨	상급 과정(5년 이상)
기초법령, 안전관리 기본지식, 현장이해		사고사례 분석, 리더십, 커뮤니케이션, 조직진단		조직·인적자원 관리, 안전문화 개선, 정책수립

○ 최신기술 등에 대한 **전문교육** 및 **고위험 사업장**에 **종사**하는 **안전·보건관리자**에 대한 업종별 안전 관리 사항 등 **특화교육 운영**

2 민간 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

○ **低 역량기관, 신규기관**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**안전·보건 기술지도 방법, 기관 운영** 방향 등 **컨설팅 지원** → **우수 기관 육성**

○ 위탁사업장의 안전·보건 수준 등 **현장 기술지도 충실성** 중심 평가, **등급 공개 방식** 효율화 등 **평가 체계 고도화**

▪ **부실기관**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위탁 사업장 병행 점검, 정부 사업 참여 배제 등 **제재 강화**로 **시장**에서 **퇴출 유도**

3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 기능인 양성

○ 시공능력 평가·입낙찰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·고용평가 등을 반영하여 **기능인등급제 활성화**, 안정적 고용 여건을 마련을 통한 **청년** 유입 유도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3. 안전 의식 · 문화 확산

1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

○ 안전에 대한 **경각심 제고** 및 **안전 생활화**를 위한 **온라인·모바일** 기반 **「안전일터 신고센터」 개설·운영**(8.29.~, 안전신문고 등과 연계)

■ 신고된 사업장은 **즉시 확인**을 통해 **위험 요인 개선 지도**

현장 사례

·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**안전띠·안전고리 미체결**로 **추락 위험 신고**(9.4.)
☞ **현장 출동**하여 ▲**추락망 설치 후 보고**, ▲**안전조치 철저히 할 것**을 **지도**

○ 산재 발생 위험 등 **적발·신고** 시 **포상금 지급**('26년(안) 111억 원)

■ ①사업주의 **안전·보건 조치 의무 위반**, ②산재은폐·정부명령에 대한 **고의적인 미이행** 신고 시 **파격적**으로 **포상**

■ **중대한 사고 예방**에 기여한 **신고 사항**은 **추가적인 포상**

[포상금 지급(안)] ▲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**(방호설비 미준수 등): 1건 당 50만 원
▲**고의적인 법 위반**(산재은폐, 정부명령 미이행 등): 1건 당 500만 원

2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

○ 경제단체, 업종별 협·단체 등과 협력하여, **자발적인 안전 투자 확대** 및 **안전 확보 노력 촉구**

■ 정부,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**「가칭 기업 안전문화 확산 추진단」**을 **구성·운영**하여 경영진 **인식 제고 활동 전개**

■ **경제단체**(경총) **및 업종별 협·단체**로 구성된 **「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」** 발족(10월) 및 분기별 정례화

* 경총 및 8개 제조업종별 협단체로 구성(반도체·철강·뿌리·석유화학 등) → 업종 지속 확대('26~)

○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**「안전문화 협의체」**를 통해 **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*** **추진**

* (예시) 위험표지판 부착,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 특화 활동 등

○ **대국민 안전 인식 확산**을 위한 **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**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

1. 신속·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

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·인허가 취소

□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

○ **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** 시 **법인**에 대한 **제재적 성격의 과징금**(예시 : 영업이익의 5% 이내, 하한액 30억 원) **도입**(산업안전보건법)

* 사망자 수·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, 과징금 심사위원회 신설

- 부과된 과징금은 **산재예방**에 **재투자**될 수 있도록 **「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」**에 **편입**
- 전문가 논의,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대상·금액·절차 등 구체적 방안 마련

□ 영업정지 대상 확대

○ **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**을 현행 「동시 2명 이상 사망」에서 **「연간 다수 사망」**도 **추가**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)

○ **요청 대상**은 **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공사 건설사** 등 **포함**
(전기공사사업법, 정보통신공사업법, 소방시설공사업법, 국가유산수리법, 산안법 시행규칙)

○ **사망자 수**에 따라 **영업정지 기간**(現 2~5개월) **강화**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)

* (現) ▲2~ 5명 (3개월) ▲6~9명 (4개월) ▲10명 이상 (5개월)

□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추진

○ 최근 3년 간 **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**의 **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**(산업안전보건법)

- **노동부 요청** 시 **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**토록 **명확화***(건설산업기본법)

* 등록말소 사유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한 경우'를 추가

○ **법률 전수조사**를 통해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**중대재해 발생**을 **인허가 취소**나 **영업정지 사유**에 포함(해당 법률 신속 정비, 법제처 협조)

* 세무정보 활용, 현장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여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

□ 공공입찰 참가 제한

○ 민자·민간 사업장에서 **중대재해**를 **발생**시킨 **건설사**까지 **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**에 포함(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)

○ 입찰 참가 **제한 요건**을 **중대재해 반복 발생**하는 **경우**로 **확대** 및 **입찰 제한 기간**도 **확대**(예시 : 現 2년 → 改 3년)(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)

* (예시) 동시 2명 이상 사망 →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도 추가

○ **입찰 참가 자격 제한**에 대해 **법인 분할**이나 **명의 변경**을 통한 **제재 회피** 차단 위해 **제재효력 승계 규정 마련**(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)

□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강화

○ 시설공사, 물품, 용역 등 **공공조달 全 분야**의 **낙찰자 결정** 시 **중대재해 발생 여부** 등에 대한 **평가 강화**

〔 분야별 낙찰자 평가 강화 〕

구 분		현행	개선
시설공사	적격심사	▪ 건설안전 평가 가점제 운영 중	▪ '중대재해 위반' 항목 신설
	종합심사·사전심사		▪ **건설안전 항목 배점제 전환** ▪ '중대재해 위반' 항목 신설
물품용역	적격심사	▪ 산업안전 관련 심사 항목 없음	▪ 물품.용역 신인도 심사 항목에 '중대재해' 감점 신설
	다수공급자계약 등	▪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으로 안전 고려	▪ **적격성평가 결격사유에 '중대재해' 신설**
	기술용역	▪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평가 시 건설사업 부실 벌점(안전 관리 소홀) 적용	▪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평가 시 **건설사업 부실벌점 적용 강화**
	우수제품	▪ 산업재해 관련 신인도 감점 운영 중	▪ 지정 시 신인도 심사항목에 '중대재해' 감점 신설

○ **민자 사업**에서도 '**건설안전 평가**' **배점**(現 10점)을 **상향**하고, **사고 건설사**에 대한 **평가 시 감점 기준 명확화**(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관련 기준)

* 민자사업의 안전 규정 구체화를 위해 민간투자법령 개정(국가계약법령 개정 내용 준용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2. 여신심사,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

1 여신심사, 보증,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

○ **대출금리·한도·보험료**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**확대 반영**될 수 있도록 금융권 **자체 여신심사 기준, 대출 약정** 등 개선

○ HUG **분양보증**(의무), HUG·HF **PF 대출보증** 취급 시 **안전도 평가** 도입 등 **심사 강화**(감점 신설 등)

-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**선분양 제한 적용**, 선분양 **제한 기간** 및 **분양 시점** 등 **기준 강화 검토**
- 미분양 직접 매입(LH),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(HUG) 시 **중대재해 유발업체** 등에 대한 **심사 강화**

○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**정책자금**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) **참여 제한**

2 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

○ 상장회사가 **중대재해 발생**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**형사판결** 시 관련 사실을 **지체없이 공시**하도록 **의무화**(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)*

* 공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벌점 크기에 따라 제재금·매매거래정지·관리종목지정 등 조치 가능

○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**투자판단**에 고려될 수 있도록 **ESG 평가, 스튜어드십코드***에 반영

*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·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

국민연금	민간
▪ ESG 평가지표에 중대재해 관련 지표 추가 (現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→ 改 사망자 2명 이상, 중대 산업사고 발생, 은폐·미보고 추가) ▪ 사건 발생 시 ESG 평가점수 감점 비율 상향 조정	▪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,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→ 중대재해 내용을 반영하도록 근거 명확화

○ 중대재해 다발기업에 대해 **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제한***

* 신규 투자 제한, 재해 반복 발생 시 점진적 투자금 회수 등 발생빈도에 따라 제재 가중

❖ **통일된 기준**(제재 대상, 시점) **및 사업장 정보 공유 체계 구축**(법적 근거 마련)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3. 사고 조사 · 수사 강화

1 안전 · 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

○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**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**되는 경우에 **고용노동부 장관**의 **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**(산업안전보건법)

* (예시) ①사망에 이르지 않지만, 의식불명,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, ②사업장 내·외 중대산업사고 우려, ③안전·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등

○ 유해·위험성이 높은 **기계·원재료, 건설물** 등에 대한 안전·보건조치 미비 시 **적극적 시정조치 명령**

▪ 시정조치 미이행 시 **사법처리 + 해당 기계·설비 관련 작업중지**

○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**일반감독** 시 **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**을 **적발**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**즉시 집행**(10.1~)

▪ 과태료 위반행위도 **법정 과태료 부과기준**에 따라 **엄격**하게 **부과**

○ **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** 및 **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** (양형위원회와 협의 추진)

2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·엄정 수사

○ **노동부 - 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** 등 관계 부처 협업 강화로 **중대재해 발생 기업**에 대해 **신속**하게 **송치·기소**

▪ 대검찰청· 노동부 **정기 수사 상황 점검 회의,** 대형사고 발생 시 **노동부- 검찰청**(관할지역) **수사협의회, 노동부·경찰 합동 압수수색**(검찰 조율)

○ **다단계 하도급 구조** 하에서 **재해 반복 사업장** 등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**불법파견 여부**도 **점검 병행, 엄정 처리**

○ **노동부전담 수사조직**(現 13개과 2팀) **확충**·본부-지방관서 **수사 전담팀 운영**

▪ **검찰**중대재해 사건 **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행,**
경찰산업재해 전담 수사팀'(전국 17개 시·도 경찰청) 신설

○ **초동수사부터 공판**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**엄정 대응 기조 확립**

* (초동수사) 현장 감식에 전담 검사 직접 참여,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→ (보완수사) 실질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철저 규명 → (공판) 현장검증 적극 신청, 중대재해처벌법 구형 기준 준수

Ⅴ. 향후 계획

❖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**신속 추진, 집행 체계 혁신**을 통한 **기능·역할** 강화, **특별위원회**를 운영하여 **「산재예방 5개년 계획*」 마련**

▲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, ▲새로운 위험요인 대비, ▲노사의 책임 강화, ▲업종별 특화 대책 마련 등

□ 대책 이행

○ **(입법) 법 개정안**은 **조속히 마련**하여 당정 협의 후 **연내 입법** 추진, **하위법령 개정사항**은 **연내 개정 완료** 목표로 **개정 절차 즉시 착수**

* (입법 사항) 8개 부처(노동부·국토부 등) 12개 법률(산업안전보건법, 건설산업기본법 등)

○ **(예산)**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**'26년 예산** 및 앞으로도 **지속 반영**되도록 **재정 당국·국회**와 **긴밀**하게 **협의**

* ('26년 안) 2조 722억 원(노동부, 중기부, 국토부, 산업부 등)

○ **(이행 상황 점검) 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**을 위해 **부처, 노사** 및 **유관단체** 등과 **간담회·현장 방문** 등 **소통 강화**

□ 추진체계 구축

○ 산재예방대책의 일관성·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**'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' 설치·운영**(산업안전보건법)

* 구성(안) : 노사정 및 전문가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

○ **민관 합동**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**「산재예방 5개년 계획」**을 **수립**하고, **현장 실태 상시 모니터링, 산재예방 관리·연구** 등 수행

* ▲일터 안전 혁신, ▲노동자 참여 및 책임, ▲노·사의 역할과 협력체계 재정립, ▲중앙-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감독 강화, ▲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 체계·제도 분석 등

○ 감독·관리 역량을 높이고, 중앙·지방자치단체·민간 등 **전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·협력, 범정부 협업**과 **총괄조정 기능 강화**

❖ **'노사정 대표자 회의' 개최**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, 5개년 계획 수립 등 **노사정**이 **함께** 만들어가는 **안전 일터 본격 추진**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붙임 1 향후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Ⅰ.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		
1.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		
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, 현장 수요 중심으로 재정 지원 개편		
①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	노동부	'25.下~
② 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과 연계	노동부	'25.下~
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 규모 및 자율품목 확대	노동부	'25.下~
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	노동부·중기부	'25.下~
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·장비 지원	노동부	'25.下~
② 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		
① 타부처 협업 R&D로 안전분야 기술·제품 개발	노동부·중기부·산업부·국토부·과기부	'25.下~
②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·제품 재정지원 연계	노동부	'25.下~
③ 위험요소 식별 및 개선 사항 제시 AI 도구 개발	노동부	'26.~
④ AI·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 지원	과기부	'26.~
⑤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	산업부	'26.~
③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·기술 지원		
①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요건 강화	노동부	'26.~
②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부담 경감 지원 방안 신설	노동부	'26.~
③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	노동부	'26.~
④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으로 역량 강화 지원	노동부	'26.~
⑤ 중상해 재해에 대한 기술지원 도입	노동부	'26.~
⑥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이행 점검 확대, 재정지원과 연계	노동부	'25.下~
④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·지원		
① 생명안전 인지도·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안전 교육 확대	노동부·중기부·행안부·인혁처	'25.下~
② 위험상황, 작업공정 재현 VR 교육자료, 동영상 배포	노동부	'25.下~
③ 체험교육 인센티브 확대, 공공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	노동부·행안부	'26.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5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		
①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	기재부	'26.~
② 산재예방 우수 기업 발굴·선정으로 모범 사례 확산	노동부·행안부 등	'25.下~
2.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		
1 외국인 노동자: 고용 제한 강화 +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		
①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고용 제한 요건 강화	노동부	'26.~
②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를 사업주로 확대	노동부	'26.~
③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통한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	노동부	'25.下~
④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및 수당 지급	노동부	'26~
⑤ 농촌 중심 주거환경 시설 정비 및 숙소지원 확대	노동부·농림부	'26~
⑥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직무 훈련 과정 신설	노동부	'26.~
2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법의 보호 범위 확대+교통사고 예방		
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적용 규정 확대	노동부·국토부	'26.~
② 안전조치 준수 점검 확대, 안전 문화 캠페인 지원	노동부·행안부·경찰청	'26.~
③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도입	노동부	'27.下~
④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, 안전교육 의무화	노동부·국토부	'26~
3 고령노동자: 특화 작업환경 개선, 교육·건강관리 강화		
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	노동부	'25.下~
② 고령노동자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	노동부	'25.下~
③ 고령노동자 특화 콘텐츠 개발·보급, 안전교육 실시	노동부	'26.~
④ 고령자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	노동부	'26.~
3. 지방자치단체·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		
1 중앙정부: 고위험 사업장 점검·감독 확대		
① 감독관 증원과 연계 감독 물량 확대	노동부	'26.~
②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, 안전일터 신고센터 연계	노동부	'25.下~
③ 산업안전+근로기준 합동 감독으로 구조적 문제 파악·개선	노동부	'25.下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2 지방자치단체: 30인 미만 점검·감독+지역 특화 예방 활동		
① 감독권한 위임,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·감독 추진	노동부	'26.~
②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기획·운영토록 사업 신설	노동부	'26.~
③ 중앙-지방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별 관리 강화	노동부·행안부	'26.~
3 민간: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상시 순찰		
① 안전지킴이 영세사업장 집중 투입	노동부	'26.~
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집중 지도·관리 강화	노동부	'25.下~
③ 지방관서-안전협회-보건협회 간 협조 체계 구축·운영	노동부	'25.下~
Ⅱ.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·책무 확립		
1.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		
1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		
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	국토부	'26.~
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원청 및 업종 확대	노동부	'26.~
③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점검 및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	노동부·공정위	'26.~
2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		
① 민간공사 계약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 확보 유도	국토부	'26.~
②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	노동부	'26.~
2.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		
1 인력·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		
① 중대재해 발생 책임 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	기재부	'26.~
② 2인 1조 작업, 신규자 단독 금지작업 운영 실태조사	기재부	'25.下~
③ 투자 계획,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·관리	기재부	'25.下~
④ 기관장·경영진, 사업주, 근로자 등 안전교육 강화	기재부	'25.下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2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 포함 안전 관리 평가		
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 관련 항목 반영 및 배점 상향	기재부	'26.~
② 공공부문부터 평가 지표에 수급업체 안전 관리 수준 반영	기재부·행안부	'25.下
③ 안전활동 수준평가 중대재해 반영, 근로자 면담 신설	노동부	'25.下~
④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수준평가 도입·확대	행안부·노동부	'26.~
3. 안전 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		
1 불법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구조 개선		
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	노동부·국토부	'25.下~
②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 확대	국토부	'26.~
③ 공공기관 하도급 실태조사	관계부처 합동	'26.~
④ 질식 위험 업무 하도급 규정 정비	노동부·기재부·행안부	'25.下.~
2 적격 수급인 선정 등 주체별 안전 관리 강화		
① 적격 수급인을 선정·계약토록 의무 내용·절차 명확화	노동부	'26.~
②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 개정·보완	노동부	'25.下.~
③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강화	노동부·국토부	'26.~
4.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		
1 알 권리: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		
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	노동부	'25.下~
②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적 공개 방안 마련	노동부	'25.下~
③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으로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	노동부	'26.~
④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수 공시 주기 확대	기재부	'26.~
⑤ 중대재해 다발 업종 표준모델, 고위험요인 자료 보급	노동부	'25.下~
⑥ 위험성평가 미실시 벌칙 적용,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	노동부	'26.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[2] 참여 권리: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		
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노사 참여 확대	노동부	'26.~
② 건설업 원하청 안전·보건협의체 구성·운영 의무 범위 확대	노동부	'26.~
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교육 훈련 지원	노동부	'26.~
[3] 피할 권리: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		
①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	노동부	'26.~
②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 방지	노동부	'26.~
Ⅲ.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		
1.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		
[1]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및 인력 확충		
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및 협업 강화	노동부	'26.~
② 산업안전감독관 확충	노동부	'26.~
[2]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 및 보직 관리		
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 확대	노동부·행안부	'26.~
② 현장 중심의 체험·실습형 교육 강화	노동부	'26.~
2. 안전·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		
[1] 안전·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		
① 현장 경력 정보 체계적 관리	노동부	'26.~
② 안전·보건관리자에 대한 업종별 특화교육 운영	노동부	'26.~
[2] 민간 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		
①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	노동부	'26.~
②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체계 고도화	노동부	'26.~
[3]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 기능인 양성		
①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, 청년 유입 유도	국토부	'26.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3. 안전 의식·문화 확산		
[1]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		
① 온라인·모바일 기반 안전 일터 신고센터 개설·운영	노동부	'25.9월~
②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·신고 시 포상금 지급	노동부	'26.~
[2]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		
① 자발적인 안전 투자 확대 및 안전 확보 노력 촉구	노동부·산업부	'25.下~
② 안전문화 협의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	노동부	'26.~
③ 대국인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추진	노동부	'25.下~
Ⅳ.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		
1. 신속·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		
[1]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·인허가 취소		
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도입	노동부	'26.~
②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	노동부	'26.~
③ 전기공사 등 영업정지 요청 대상 공사 확대	노동부·산업부·과기부·소방청, 국가유산청	'26.~
④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사 영업정지 수준 강화	국토부	'26.~
⑤ 영업정지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	노동부·국토부	'26.~
⑥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	소관부처·법제처	'26.~
[2]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		
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확대	기재부·행안부	'26.~
②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·기간 확대	기재부·행안부	'26.~
③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효력 승계 규정 마련	기재부·행안부	'26.~
④ 공공조달 낙찰자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 강화	기재부·조달청·행안부	'25.下~
⑤ 민자사업 낙찰자 건설안전 평가 배점 상향, 감점기준 명확화	기재부	'25.下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2. 여신심사,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		
1 여신심사, 보증,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		
①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, 대출 약정 등 개선	금융위	'25.下~
② 분양보증, PF 대출보증 취급 시 심사 강화	금융위·국토부	'26.~
③ 중대재해 유발 업체 분양 과정에서 패널티 부여	국토부	'26.~
④ 중대재해 발생 시 정책자금 지원 제재 강화	중기부 등	'25.下~
2 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		
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등 공시 의무화	금융위	'25.下~
② 중대재해 관련 사실 ESG 평가,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	금융위·복지부	'25.下~
③ 중대재해 다발기업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제한	노동부	'26.~
3. 사고 조사·수사 강화		
1 안전·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		
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	노동부	'25.下~
②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 활성화	노동부	'25.下~
③ 일반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	노동부	'25.下~
④ 산안법 양형기준 상향, 중처법 양형기준 신설	법무부·노동부	'25.下~
2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·엄정 수사		
① 노동부-대검찰청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강화	노동부·법무부	'25.下~
② 다단계 하도급 재해 반복 사업장 불법파견 여부 점검 병행	노동부·법무부	'25.下~
③ 전담 수사조직 확충,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	노동부·법무부·경찰청	'25.下~
④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 기조 확립	법무부	'25.下~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붙임 2 입법과제 목록 [8개 부처 12개 법률]

대책 주요 내용		관련부처	개정 법률
1 지원 예방	‣ 택배업 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	국토부	생활물류서비스법
	‣ 야간작업 고위험군(택배 등) 건강진단 신설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	국토부	생활물류서비스법
2 노사의 역할·책무 강화	‣ 발주자(공공·민간)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	국토부	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제정
	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(원청)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 포함	국토부	건설산업기본법
	‣ 발주자의 적정 공기 산정, 전문·인허가기관 장의 심의·검토	국토부	건설안전특별법제정
	‣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	기재부	공공기관운영법
	‣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확대	국토부	건설산업기본법
	‣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의무 내용·절차 명확화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건설공사 발주자·설계자·감리자 책임 신설	노동부, 국토부	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제정
	‣ 재해조사보고서 공개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대표 참여,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의무화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노동자·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·시정조치 요구권 신설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3 실효적 제재	‣ 사망사고 다수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영업정지 대상 확대 및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	노동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소방청 국가유산청	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
	‣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참가 제한	기재부, 행안부	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
4 안전의식	‣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	‣ 특별위원회 설치·운영	노동부	산업안전보건법

보도시점: '25.9.15.(월) 14:30

붙임 3 해외 사례

□ [싱가포르] 강력한 처벌·제재와 기업 인센티브 병행

○ **산재 감축** 및 **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립**을 위한 **범국가적 전략** (WSH 2015, 2018, 2028) 추진 → 산재사망자 수 **대폭 감소**

* (10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, 이하 동일) **'04. 4.9명→'23. 0.99명** (영국 0.4명, 일본 1.5명, 한국 4.2명)

❶ 벌금 상한액 인상, 수주제한 및 입찰 불이익 등 **강력한 처벌·제재,** 입찰가점, 우수기업 포상 등 **기업 지원**

❷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**노동자 참여 보장**으로 **사고예방 주체의식 내재화** 추진

○ 정책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권한 있는 **노사정 산업안전보건전담기구**(WSH Council) 설치·운영

□ [일본] 취약계층 지원 및 업종·사고유형별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

○ 제14차 **노동재해방지계획**('23~'27)을 통해 **중대재해 감소** 추진

❶ 언어 배려 안전교육, 전도·넘어짐 예방조치 확산 등 **외국인·고령자 특화 지원으로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**

❷ **업종·사고유형별**(건설업 추락, 제조업 끼임, 임업 벌목) **가이드라인 제공**

❸ **안전보건체계**가 **기업에 비용이 아닌 경쟁력**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**민관 공동 캠페인** 및 **정책적·경제적 지원 병행 추진**

○ **지역별 행정조직**에서 지역 산재특성에 적합한 **집중 감독·점검*** 실시

* ▲건설업(추락·전도), ▲운송업(교통사고), ▲제조업(협착·끼임)

➡ **(싱가포르)** **처벌·제재**를 강화하여 **사고에 따른 대가를 높이고, 우수 기업 포상** 및 **노동자 참여 보장**

➡ **(일 본)** **인구구조 변화**에 대응한 고령자·외국인 노동자 및 업종·지역별 특화 **예방대책 강화**